## 환경부의 "병입 수돗물 판매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입장"에 대하여

일시: 2008년 11월 26일

발신: 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사무국장 한지원

#### 1. 정부의 해명

- 정부는 어제 25일 본 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명의의 해명 자료는 본 단체의 기자회견 중
  - ✓ 수돗물 양극화 주장에 대해 수도법 상에서 "수도법 개정안은 병입 수돗물을 추가처리 없이 정수장 수돗물과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쳐야만 판매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입 수돗물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 돗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 ✓ 민간위탁을 통한 병입 수돗물의 민간기업 판매 가능성에 대해 "수도법 개정 안에는 병입 수돗물 판매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업 운영의 위탁과 병입 수돗물 판매사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 므로" 우려 지점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 ✓ 수돗물 이용 비용 상승에 대해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관망 수 돗물 공급의 보완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병입 수돗물의 경쟁 상대 는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병입 생수라고 해명하였습니다.
- <u>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해명은 전경련이 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u> 제시하였고, 서울시 등이 한국 및 중국 병입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제안한 수도법 개정안의 취지를 숨기기 위한 해명에 불과합니다.
- 이에 정부와 국회에 시민들의 우려 지점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환경부의 해명에 대해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2. 수도법 개정안은 수<del>돗물을</del> 등급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 ✓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용기에 넣어 판매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 기준, 수질, 용기, 포장 등 일체는 모두 환경부 장관령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일반정수처리된 물, 고도정수처리된 물 모두 수돗물이기 때문에 법령 상에서 는 '등급화' 문제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아리수 등의 병입수 돗물과 일반관망 수돗물의 차이는 수돗물 여부가 아니라 생산공정이 다른 수 돗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1. **세계적으로 어떠한 추가처리도 없는 병입수돗물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카 콜라, 펩시콜라가 수돗물을 원수로 하여 여러 음료수를 만드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 열처리와 염소제거처리를 추가로 거칩니다. 영국의 경우 맛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첨가한 화학약품이 발암물질로 변질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 2. 법개정보다 쉬운 환경부 장관령은 언제든지 장관 재량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론 무마용으로 밝힌 병입수와 관망수의 동일처리규정은 조만간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수도법 개정안이 바로 전경련과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듯이 말입니다.
- 3.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시동에 들어가는 영등포 고도처리정수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에만 공급되는 정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일반관망수돗물과 병입수돗물이 같다고 규정한다면, 이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병입수생산을 위한 정수처리시설을 일반 관망에 일부만 흘려 보내도 관망수돗물과 병입수돗물은 같은 생산공정을 거친 것이 됩니다. <u>형식</u>적으로만 같은 수돗물인 셈입니다.

# 3. 민간위탁과 병입수돗물 판매는 별개의 문제라는 해명에 대해

- ✓ 2002년에 개정된 수도법에 의해 현재 지자체는 상수도 시설 전체(정수장 개 보수 및 관리, 관망 개보수 및 관리 등등)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상수도를 수탁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만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 다양한 민간기업도가능합니다.
- ✓ 그리고 지자체와 수탁회사 간의 위탁 계약서는 관리 운영에 대한 포괄적 범 위를 다루며, 따라서 정수장 시설을 이용한 병입 수돗물 생산 및 유통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더불어 정부는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부처를 통해 지자체에게 민간위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1. 지방상수도 수탁 기업이 법적 판매자가 될 수는 없지만, <u>병입 수돗물 생산에서</u> 부터 유통, 홍보까지를 담당하며 그 비용 및 판매 이윤의 일부를 지자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 판매자는 지자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웃소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2. <u>민간 수탁회사의 경우 환경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필수 조건으로 오히려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u>. 예를 들면 포항 경주 등 정부가 지난 5월말 1년 내 민간위탁을 명령한 지자체의 경우 수탁회사는 병입 수돗물 판매 및 고도 정수처리시설 건설을 옵션으로 하여 더욱 많은 관리운영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3. <u>민간기업으로서는 관리운영비에 시설건설투자까지 수주하고 더불어 병입판매수</u> **익까지 챙길 수 있는 꿩먹고 알먹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전경련이 작년 10월 과 올해 2월에 거듭 수도법 개정을 요구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 4. 병입수돗물의 경쟁 상대는 병입생수라는 주장에 대해

- ✓ 환경부는 병입생수의 시장성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모순된 주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병입수돗물은 사실상 생산가격 및 수돗물 인식 의 장벽으로 인해 실재로는 생수와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전 에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병입수돗물의 경쟁 상대는 병입 생수라는 주 장을 해명자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입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 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 현재 수도법 개정안에서는 병입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파는 수돗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입 수돗물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 500ml, 1.8L 제품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집에서 배달해 먹는 수돗물"도 가능합니다. 18L 혹은 그 이상의 대용량 페트병도 생산 가능합니다.
- 1. 병입수돗물 판매자는 소용량 페트병에서는 일반 생수와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해외사례를 볼 때 이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결국 대용량 <u>페트병을 이용해 각종 취사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돗물 배달 서비</u> 스로 나아갈 가능성 역시 다분합니다.
- 2. 이 경우 정부의 주장과 달리 <u>병입 수돗물은 관망 수돗물과 경쟁할 것</u>이며, 결국 수돗물 양극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3. 수돗물 양극화는 비단 한 지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u>대도시와 중</u> 소도시, 농어촌 도시 사이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을 할 수 없는 소규모 도시는 대도시로부터 병입 수돗물을 배달시켜 먹어야 하는 비참 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끝〉